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22 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배현진·김성원·서일준

이용호 · 이철규 · 임병헌

정점식 · 정희용 · 조명희

최형두 · 황보승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청은 1962년 「문화재보호법」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・예술적・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.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.

그러나, 이제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,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, 문화유산 · 자연유산 · 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

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,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산기본법안」(의안번 호 제17521호), 「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5호)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4호), 「무 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 1호)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20호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7518호), 「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2호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23호), 「세계유산의 보존・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7호),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| (의안번호 제17513호), 「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22호).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"를 "국가지정문화유산 사 적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"「문화재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"를"「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풍납토성"이란 <u>국가지정문</u>	1 <u>국가지정문화</u>
<u>화재 사적 제11호</u> 인 서울 풍	<u>유산 사적</u>
납동 토성을 말한다.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보존・관리구역의 지정 등)	제7조(보존・관리구역의 지정 등)
① 문화재청장은 <u>「문화재보호</u>	① 「문화유산 보
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	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
<u>회</u>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	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
의를 거쳐 보존·관리구역을 지	
정할 수 있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